

붙임2.

상세 지원안내 [전문기관형 ① - 디자인 개발]

- 지원목적 : 제품의 상품 가치 및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
- 지원한도
 - 제품, BI/CI : 10,000천원 이내
 - 포장·용기 : 8,000천원 이내
- ※ 위 지원한도는 진흥원과 용역수행업체 간 최종 계약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.**
- 지원내용
 - 개발 전략 수립 및 컨셉 설정
 - 시안 또는 샘플 제작
 - 최종 개발 완료된 디자인에 대한 권리확보 및 사후관리
- 지원조건 : 제품, BI/CI, 포장·용기 중 택1
- 추진방법 : 전문기관형
- 추진절차
 - (진흥원) 선정기업의 수요·요청에 따라 디자인 개발을 수행할 전문 용역수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시행
 - (평가위원)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 진행
 - (진흥원) 계약 완료한 전문 용역수행업체 - 선정기업 간 매칭
 - (진흥원·용역수행업체·선정기업) 킥오프(Kick-Off) 미팅 진행
 - (용역수행업체·선정기업) 계약기간 동안 디자인 개발 과업 진행
 - (진흥원·평가위원·용역수행업체·선정기업)
: 중간 / 최종보고회 운영을 통한 과업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 제고

붙임2.

상세 지원안내 [전문기관형 ② - 홍보영상물 제작]

○ 지원목적 : 대내·외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

○ 지원한도 : 7,000천원 이내

※ 위 지원한도는 진흥원과 용역수행업체 간 최종 계약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.

○ 지원내용

- 한국어 및 외국어 홍보영상물 제작

- FULL HD급 이상의 영상물 제작

※ 단,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선정기업의 요청에 따라 영상 제작의 방향 설정 가능.

○ 지원조건 : 신규 제작 및 리뉴얼 중 택1

○ 추진방법 : 전문기관형

○ 추진절차

- (진흥원) 선정기업의 수요·요청에 따라 디자인 개발을 수행할 전문 용역 수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시행

- (평가위원)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 진행

- (진흥원) 계약 완료한 전문 용역수행업체 - 선정기업 간 매칭

- (진흥원·용역수행업체·선정기업) 킥오프(Kick-Off) 미팅 진행

- (용역수행업체·선정기업) 계약기간 동안 디자인 개발 과업 진행

- (진흥원·평가위원·용역수행업체·선정기업)

: 중간 / 최종보고회 운영을 통한 과업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 제고

붙임2.

상세 지원안내 [기업주도형 ① - 온라인마케팅]

- 지원목적 :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로 개척 및 확보 지원
- 지원한도 : 공급가액의 90%(단, 최대 7,000천원 이내)
- 지원내용
 - 홈페이지 신규 제작 또는 리뉴얼 비용
 - 온라인몰 입점·판매수수료
 - 포털사이트 광고비(배너광고, 검색광고 등)
 - SNS/인플루언서 홍보·마케팅 비용
 - 온라인(블로그 등) 체험단 운영비
 - 라이브커머스 입점·판매 수수료, 운영비 등
- 추진방법 : 기업주도형
 - 선정기업이 거래대금 전액 지불한 후 지원금 지급
- 추진절차
 - (선정기업) 과업 수행 및 거래대금 전액 거래처에 지불
 - (선정기업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
 - (진흥원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붙임2.

상세 지원안내 [기업주도형 ② - 시제품 제작]

- 지원목적 : 정식 상품화 또는 완제품 출시에 앞서 성공 가능성 제고
- 지원한도 : 공급가액의 90%(단, 최대 6,000천원 이내)
- 지원내용
 - 시제품 도면 설계비
 -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목업비 또는 금형비
- 지원조건 : 신규 출시를 목표로 하는 시제품에 한하여 지원
- 지원제외
 - 원재료 또는 부품 등의 단순 재료 구매비용 지원 불가
 - 단순 소모품 또는 자산 취득성 구매 및 제작 건 지원 불가
 -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(제작) 건 지원 불가
 - 대량생산 지원 불가
- 추진방법 : 기업주도형
 - 선정기업이 거래대금 전액 지불한 후 지원금 지급
- 추진절차
 - (선정기업) 과업 수행 및 거래대금 전액 거래처에 지불
 - (선정기업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
 - (진흥원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붙임2.

상세 지원안내 [기업주도형 ③ - 홍보물 제작]

- 지원목적 :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 마련
- 지원한도 : 공급가액의 90%(단, 최대 5,000천원 이내)
- 지원내용
 - (지류 또는 전자 형태의) 카탈로그, 리플렛, 브로셔 제작비
 - 홍보용 배너, 포스터, 현수막 등의 제작비
- 지원조건
 - 기업 또는 제품을 나타내는 표시, 로고, 이미지 등 필수 삽입
 - 신규 홍보물 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지원 가능
 - 인쇄·출력 등 제작 완료 후 실물로 납품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 - ※ 실물로 납품받지 않고 디자인·시안 제작 비용만으로 청구하는 경우 지원 불가
- 지원제외
 - 고객 증정용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
 - 기존 홍보물을 단순 추가 인쇄·제작한 경우 지원 불가
 - PDF, PPT 등 파일의 형태로만 납품받은 경우 지원 불가
- 추진방법 : 기업주도형
 - 선정기업이 거래대금 전액 지불한 후 지원금 지급
- 추진절차
 - (선정기업) 과업 수행 및 거래대금 전액 거래처에 지불
 - (선정기업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
 - (진흥원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붙임2.

상세 지원안내 [기업주도형 ④ - 포장재 제작]

- 지원목적 : 제품의 유통 단계에서부터 홍보·마케팅 지원
- 지원한도 : 공급가액의 90%(단, 최대 5,000천원 이내)
- 지원내용
 - (내·외) 포장재 제작비(디자인 및 인쇄·납품 비용)
- 지원조건
 - 기업 또는 제품을 나타내는 표시, 로고, 이미지 등 필수 삽입
 - 인쇄·출력 등 제작 완료 후 실물로 납품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 - ※ 실물로 납품받지 않고 디자인·시안 제작 비용만으로 청구하는 경우 지원 불가
- 지원제외
 - 단순 소모품(아이스박스, 무지 카톤박스 등) 지원 불가
 - 에어캡 등 완충재 · 충전재, 냉각팩 등 지원 불가
- 추진방법 : 기업주도형
 - 선정기업이 거래대금 전액 지불한 후 지원금 지급
- 추진절차
 - (선정기업) 과업 수행 및 거래대금 전액 거래처에 지불
 - (선정기업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
 - (진흥원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붙임2.**상세 지원안내 [기업주도형 ⑤ - 국내인증마크 획득]**

- 지원목적 : 기업·제품의 신뢰성 확보, 기술·입찰 경쟁력 제고 등
- 지원한도 : 공급가액의 90%(단, 최대 3,000천원 이내)
- 지원내용
 - 인증·마크 획득을 위한 외부 컨설팅 비용
 - 검사·시험·심사비 등
 - 인증·마크 예시 아래 표 참조

구분	인증마크명	지원범위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(13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성능인증 •우수조달물품 •GS •NEP •NET •우수조달공동상표 •수요처지정형기술개발제품(구매조건부, 민관공동투자, 성과공유과제성공품) •녹색기술제품 •산업융합품목 •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제품 •혁신제품 •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•재난안전인증제품 	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
법정의무 인증(9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KS, •환경마크, •GR, •K마크, •Q마크, •HACCP, •KC, •GMP, •고효율에너지기자재 	
기업인증(3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이노비즈, •메인비즈, •벤처기업 	
신용관리(1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수수료 	

※ 상기 명시된 인증·마크 외 국내 인증·마크 취득 시 담당자 문의 요망

- 지원조건
 - 국내인증·마크 획득에 한하여 지원 가능
 - 인증서 최종 획득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
 -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 등 인증·마크 재취득 건 지원 가능
- 지원제외
 - 해외인증·마크 획득 비용 지원 불가
- 추진방법 : 기업주도형
 - 선정기업이 거래대금 전액 지불한 후 지원금 지급
- 추진절차
 - (선정기업) 과업 수행 및 거래대금 전액 거래처에 지불
 - (선정기업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
 - (진흥원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① 전시박람회 참가

- 지원목적 : 바이어 발굴·상담 및 고객 마케팅을 통한 판로 개척
- 지원한도 : 공급가액의 90%(단, 최대 3,000천원 이내)
- 지원내용
 - 전시박람회 참가비 및 부스 임차료
- 지원조건
 - 국내 전시박람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지원제외
 -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건 지원 불가
 - 특판전, 학회, 세미나 참가 건 지원 불가
 - 전시박람회 참가비, 부스 임차료 외 다른 항목(체재비, 통역비 등) 지원 불가
- 추진방법 : 기업주도형
 - 선정기업이 거래대금 전액 지불한 후 지원금 지급
- 추진절차
 - (선정기업) 과업 수행 및 거래대금 전액 거래처에 지불
 - (선정기업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
 - (진흥원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

② 대형유통업체 입점

- 지원목적 :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매출 성장 기회 확보
- 지원한도 : 공급가액의 90%(단, 최대 3,000천원 이내)
- 지원내용
 -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 입점·판매수수료 및 판촉·홍보비
 - TV홈쇼핑 입점·판매수수료 및 판촉·홍보비
 - ※ 판촉·홍보비 : 홍보용 배너, 판촉 리플렛 제작비, 판촉인력 인건비 등
- 지원조건
 - 국내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지원제외
 - 해외 유통업체 입점 건 지원 불가
 - 온라인 대형유통업체 입점 건 지원 불가
 - '기업주도형 ① 온라인마케팅'으로 지원
- 추진방법 : 기업주도형
 - 선정기업이 거래대금 전액 지불한 후 지원금 지급
- 추진절차
 - (선정기업) 과업 수행 및 거래대금 전액 거래처에 지불
 - (선정기업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
 - (진흥원)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,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